

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5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윤영희, 김경훈, 김규남,
김길영, 김용일, 김재진,
김지향, 남창진, 박성연,
박칠성, 송경택, 옥재은,
유정인, 유정희, 이상욱,
이영실, 이종태, 장태용,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, 상위법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(안 제1조의2 신설).
- 나.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기능)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
3.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
4.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
5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
6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
7.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
8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

다)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
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
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
같이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: 매년 2회

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조의2(기능) 서울특별시 지역 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</u> <u>2.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</u> <u>3.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 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</u> <u>4.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</u> <u>5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</u> <u>6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</u> <u>7.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</u> <u>8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</u>
<p>제2조(구성) ① <u>서울특별시 지역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 <u>위원회</u>-----</p>

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<신설>

② (생략)

-----.

② -----
시장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: 매년 2회
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